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45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신정훈 · 서삼석 · 양부남
박선원 · 이병진 · 차지호
모경중 · 이해식 · 부승찬
이정문 · 안도걸 · 정진욱
문금주 · 조인철 · 박정현
서미화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으로 일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업 경영비 부담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기반 약화, 농촌지역 소득 감소 등 농업·농촌 전반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농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되는 등 농촌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세특례는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

이에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의 지역사회 환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 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 라.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② ~ ⑥ (생략)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illegible]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2028년 12월 31일-----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202
8년 12월 31일 까지 -----

1. <u>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u> 받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5	1. <u>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u> ----- -----
2. <u>2027년 1월 1일 이후</u> 받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9	2. <u>2030년 1월 1일</u> ----- -----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u>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u>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 ----- ----- -----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2 <u>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u> ----- ----- ----- ----- ----- ----- ----- -----

② 2030년 1월 1일-----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

----- . -----

-----2028년 1
2월 31일-----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